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60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김소희·최수진·송석준

박형수 · 서지영 · 김대식

박덕흠 · 강승규 · 우재준

김상훈 · 엄태영 · 권영세

서일준 · 최은석 · 서범수

김선교 • 이헌승 • 조경태

김장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이하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에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7(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
	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
	의 벤처기업 발굴ㆍ육성을 지
	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
	처기업지원센터(이하 "전문벤
	처기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
	<u>정할 수 있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u>있다.</u>
	③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의 지
	정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